

##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

---

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— 다 음 —

1. 상호 : 한국주택금융공사 (사업자등록번호 : 104-81-86269)

2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 범위

-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

3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

- 주금공법 상 “주택”의 정의\*에 따른 국내의 주택을 담보로 취급된 주택 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

\* ...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(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"주택"이라 한다)…(주금공법 제2조제3호)

4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
- 금융회사는 장기·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,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커버드본드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신용보강 서비스 제공

## 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2조 및 제34조

제22조(업무의 범위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

가. 주택저당증권

나. 학자금대출증권

다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

제34조(지급보증) ① 공사는 주택저당증권·학자금대출증권 및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.

## 6. 부가조건

- ① 금융회사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은 국내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본드에 한한다.
- ② 공사가 운영하는 적정 지급보증배수('24년 38.6배) 내에서 운영한다.
- ③ 연중 지급보증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까지 금융위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이후 매분기말 커버드본드 보증 현황도 익월 15일까지 정례적으로 보고한다.
- ④ 금융위 사무처 및 공사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한 「주택금융공사법」 개정을 금년중 조속히 추진한다.

7. 지정일 : 2024. 4. 3.

8. 지정기간 : 지정 이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